「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수탁자의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에대해 규정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자격 및 역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 및 역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신규 위탁과 재위탁으로 이원화하여 기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을 신규 심사 기준과 재위탁 심사 기준으로 이원화함(안 제1호 가목 및 나목 신설)
- 나.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 내에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항목을 일부 정비하고,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이하를 받은 개인에 대한 대체점수 산정기준을 명시함(안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표)
- 다. 제2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를 「영유

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C등급 이하인 경우로 명시함(안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배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심사항목	총점		=	배점
합 계	100	세 부 항 목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평가 인증 또는 평가등급 A	10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 평가등급 B	7
			• 평가등급 C	4
			•그 외	1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10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4.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기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 성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비고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최근 5년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 3.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심사항목	총점	세보하모		
합 계	100	세 부 항 목		배점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 • 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30	- 시설 운영 관리 * 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항실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여부,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시회와의 협조 체제 유지 정도 등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8
			보통인 경우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4
2. 운영체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운영 실적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보육시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보육시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보육시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10 8 6
		- 회계관리의 적절성	• 예산 • 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우수한 경우 • 예산 • 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10 8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보통인 경우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미흡한 경우	6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평가인증, 평가등급 A ·평가등급 B ·불인증,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	10 5 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어린이집	25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자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10 16 12
문영계획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 지원, 회계 • 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5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위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한다. 이 경 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 3.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미흡에 해당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법 제30조제1 항·제4항·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란 평가결과 C등급 이하를 받은 경 우를 의미한다. 다만 위탁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다 음 평가까지 위탁 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호의 개정규 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①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협동조합기본법」제2 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 리를 위한 조직체계 또는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 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10)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6)

②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u>「협동조합기본법」제2</u> 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또는 전단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4)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5)
- 우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3)

③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제 참여 <u>결과</u>(어린이집 평가인증서·결과서)

※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부여받은 평가등급(인증) 결과 (복수인 경우 가장 최근의 결과를 의미)

- <u>평가 인증, 평가등급 A</u>(10)

- 그 외 ------(1)
- * ①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원장 내정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심사 이전 재직한 어린이 집이 어린이집 평가를 C·D등급을 받은 경우*로서 이를 소명한 경우(이하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 *원장·교사의 귀책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C·D 등급을 받은 경우 〉

1. 운영체(원장내정자)가 어린이집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받거나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

입증 방식 어린이집 '평가결과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현장평가' 1개월 이전 해당 어린이집 재직 여부 확인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 및 관련지침에 따른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교사로서, 당해 위반행위 등 등급조정 사유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 아니었던 원장이거나 당해 위반행위 등 등급조정 사유와는 무관한 교사인 경우

원장의 경우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위반행위 등 발생 시점의 재직 여부 확인
입증 방식
교사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해 처분 등의 위반행위 등 당사자 여부 확인

원장 및 교사의 경우, 등급조정 사유 발생 사실과는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

- 1.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결과 직전의 해당 어린이집 평가·평가인증제 결과(본인이 평가에 참 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에 원장·교사로 재직한 어린이집의 재직 당시(단, 원장의 경우 현장평가 1개월 이전까지 재직한 경우도 포함한다) 평가·평가인증제 결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이전(당해 어린이집 재직 이전, 위탁 심사일로부터 최근 10년이내 평가·평가인증제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어린이집 원장·교사로 재직하였던 어린이집의 재직 당시 평가·평가인증제 결과를 ①에 따라 계산한 점수의 90%*
- * (예시) 기존에 재직한 어린이집이 평가등급 B를 받은 경우 : 8점('평가등급B'에 따른 배점) × 90% = 7.2점
- 3. 그 외의 경우에는 5점으로 반영한다.(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1점으로 반영한다)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5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1
※ 경력인정: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5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4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3
④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10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8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6
※ 소건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20)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10)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8)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우영체의 자산이 1억워 미만인 경우 (3)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별표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재위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1)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	-----	------	------	----	-----

우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등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우수하게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우수한 경우 (10)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미흡하게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
- ※ 약정사항: 취약보육, 정관 목적사업 등재 여부,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이 변경 되었을 경우 최초위탁 시 (채용예정) 원장이 갖춘 전문성에 준해야 함

② 운영체의 운영실적 - 30점

가. 시설운영 관리

- ① 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여부,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제 유지 정도 등
- <u>-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8~7)</u>
- <u>-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u> (6~5)
- <u>-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4~3)</u>
- ※ 시설운영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회 횟수(연3회 이상)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원장과 보육교사를 포함한 자체평가(연 2회 이상) 및 부모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2)

나. 보육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 <u>-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 (8~7)</u>
- <u>-</u> 보육시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6~4)

다. 회계관리의 적정성

- 예산 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우수한 경우(10~9)

③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0점

- ①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제 참여 결과 등(어린이집 평가인증서 결과서)
- *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부여받은 평가등급(인증) 결과 (복수인 경우 가장 최근의 결과를 의미)
- <u>- 평가 인증, 평가등급 A ······(10)</u>
- 불인증, 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0)
- * ①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원장내정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심사 이전에 재직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경우*로서 이를 소명한 경우(이하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 *원장·교사의 귀책사유 없이 어린이집이 C·D 등급을 받은 경우 〉

1. 운영체(원장 내정자)가 어린이집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받거나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

입증 빙식 📗 '평가결과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현장평가' 1개월 이전 해당 어린이집 재직 여부 확인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 및 관련지침에 따른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교사로서, 당해 위반행위 등 등급조정 사유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 아니었던 원장이거나 당해 위반행위 등 등급조정 사유와는 무관한 교사인 경우

원장의 경우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위반행위 등 발생 시점의 재직 여부 확인, 교사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해 처분 등의 위반행위 등 당사자 여부 확인

입증 방식

교사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해 처분 등의 위반행위 등 당사자 여부 확인

원장 및 교사의 경우, 등급조정 사유 발생 사실과는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

- 1.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직전의 해당 어린이집 평가·평가인증제 결과(본인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에 원장·교사로 재직한 어린이집의 재직 당시(단, 원장의 경우 현장평가 1개월 이전까지 재직한 경우도 포함한다) 평가·평가인증제 결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이전(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이전, 위탁 심사일로부터 최근 10년이내 평가·인증제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어린이집 원장·교사로 재직하였던 어린이집의 재직 당시의 평가·평가인증제 결과를 ①에 따라 계산한 점수의 90%*
- * (예시) 기존에 재직한 어린이집이 평가등급 B를 받은 경우 : 5점(평가등급B'에 따른 배점) × 90% = 4.5점

3. 그 외의 경우에는 2점으로 반영한다.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5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1
※ 경력인정: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5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4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3
④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5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4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3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 · · · · · · · · · · · · · · · ·
4 어린이집 운영계획 - 25점
①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
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10)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8)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우여 및 과리 평가게회이 구체서·타다서·차시서·저무서·이해가는서이 미호하 경우 ···· (6

<u>-</u>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8)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6)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u>〈법인의 경우〉</u>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3)
<u>〈단체.개인의 경우〉</u>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4)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범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